

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배 성 호*

< 목 차 >

- I. 서론
- II.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III. 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 IV. 결론

I. 서론

오늘날 GPS 등이 탑재된 휴대용 통신기기 등을 통해 우리는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공유하고 이를 이용한다. 정보주체의 측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에 따른 서비스를 향유하길 원하기도 한다. 가령 내비게이션을 통해 쉽게 길을 찾고, 현재 위치의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미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별개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¹⁾ 가령 긴급구조기관의 정보발송, 실종자의 위치확인, 범죄자의 위치추적,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상황의 경우 확진자의 동선추적을 위해 이동경로의 공개를 위하여 위치정보가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1)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202면; 전용준,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 고학수 편,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개정판)」, 박영사, 2016, 407-408면.

활용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정보화시대의 편익을 이용함에는 개인정보 내지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노출 등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근래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확진자의 이동동선의 상세한 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해당 감염자의 이동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직접적으로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정보의 의의와 개인정보 보호의 토대가 되는 개념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보호범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동의 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Ⅱ), 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개의 근거, 개인정보 공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Ⅲ)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의 의미

가. 개인위치정보의 의의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공개가 문제된다.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²⁾(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 이와 같이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는 식별성이 있는 개인 위치정보와 식별성 없는 개인 위치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개념상으로는 물건위치정보와 식별성 있는 개인위치정보 그리고 식별

2)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성 없는 개인위치정보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위치정보법이 개인위치정보의 개념에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에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물건위치정보까지도 개인위치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³⁾ 프로파일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식별성 없는 위치정보조차도 쉽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위치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⁴⁾

나. 개인정보의 의의

(1)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 위치를 매개로 한 정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규정한다.⁵⁾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목),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목)

(2)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

3) 정상조, 앞의 논문, 8-9면; 장병준, 앞의 논문, 663면.

4) 장병준, 앞의 논문, 663면.

5)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2.4. 개정되어, 2020.8.5. 시행되고 있다. 개정 전 제2조 제1호와 비교하여 보면 개정 후 제2조 제1호는 매우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전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를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었다. 특히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개념은 해석상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고, 개정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결합용이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개인정보의 개념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사유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53면.

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⁶⁾ 가령 개인의 성별, 연령대, 학력이나 신장·체중 등 신체적 특성과 직장 등과 같은 정보는 일정 정도 제한적인 집단 내지 단체 안에서는 공공연히 노출된 개인정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타인이 그런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탐색하여 기록하고 그것의 활용을 통하여 자신의 다른 인적 사항들을 추출해 낼 수 있도록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 생활 등을 통하여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⁷⁾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위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갑 등이 위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 등의 정보 공개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였다.⁸⁾ 또한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을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6) 헌재 2005.5.26., 99헌마513.

7) 권건보, 앞의 논문, 206면.

8) 대관 2014.7.24., 2012다49933.

사안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⁹⁾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개인정보도 그 공개의 의도나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개할 당시 정보주체가 예상하거나 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보호가 필요할 것¹⁰⁾이다.

(3) 모든 개인정보가 똑같이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개인정보는 타인이 개인을 식별하도록 하는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공유재산적인 성격을 가진다. 특히 공적 존재에 대해 공개된 직업 관련 개인정보는 일종의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또한 개인정보도 정보의 일종인데, 정보는 본래 유통이 될 때 정보로서의 사회적 효용 또한 높아진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데 일일이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저해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 판단은 이익형량을 통한 유연한 판단이어야 한다.¹¹⁾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가. 서

9) 대판 2016.8.17., 2014다235080.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갑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갑 회사의 행위를 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갑 회사가 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병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갑 회사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갑 회사가 병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10) 권건보, 앞의 논문, 208면.

11) 권영준,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적 이용의 위법성(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민사판례연구 I』, 박영사, 2019, 313-314면.

개인정보 보호의 토대가 되는 개념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곧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통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동의 제도이다. 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 표출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온전하게 실현되려 한다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관하여 고찰한다.

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¹²⁾를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격의 일반적 발현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로부터 도출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율된다.¹³⁾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한다.¹⁴⁾ 또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

12) 헌재 2005.5.26., 99헌마513; 헌재 2005.7.21., 2003헌마282.

13)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677-679면.

14) 헌재 2005.7.21., 2003헌마282.

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⁵⁾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도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여,¹⁶⁾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같다.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정보는 사회적 효용이 증대될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일반적 정보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는 오로지 개인에 관한 정보라기보다는 공동체와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가령 정보주체가 소지한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긴급구조기관에서 재난상황시 경보를 발송하거나, 실종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가 그러한데,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내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은 정보주체나, 정보 보유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게 유익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의 공동체 관련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령 개인위치정보는 공동체와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정보이긴 하지만 그 공동체가 나와 전혀 무관한 모든 사람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또한 질병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이용은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축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경향성과 흐름을 파악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될 지표들이 추출될 수 있다면 사회적 효용이 높아진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함께 고

15) 헌재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

16) 대판 1998.7.24., 96다42789. 동지 대판 2014.7.24., 2012다49933.

려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인격권적 속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격권은 어느 일방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려 하면 다른 일방의 인격적 이익을 간섭한다거나 침해할 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인격권의 보호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관련되는 가치와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유연히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인격권의 보호범위가 소유권처럼 절대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격권의 일종으로 파악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역시 세심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 기기 등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와 정보주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단지 국가 또는 기업과 개인의 구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조차도 문제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보시의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으로 인하여 향상될 사회적 효용도 고려하여야 할 다층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¹⁷⁾

다. 동의 제도

동의 제도를 통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동의 제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는 사전에 명시적·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제4조 제2호).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17) 권영준, 앞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691-693면.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3)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제1호, 제19조)

(4)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민간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6)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제22조 제3항).

(7)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2조 제4항).

(8) 그 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2조 제7항).

Ⅲ. 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1. 서

근래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미증유’라는 단어가 자주 회자되곤 한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일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난다 보니 우리 모두를

당혹케 한다.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고 그 확산속도와 피해의 정도가 우리의 경험치를 초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Mers)의 출현 이후 그 대응과정에서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된 경우를 경험한 바 있다. 그 이후 감염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 한다)'을 개정하고,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등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였다. 가령 감염병 등의 확산시, 질병관리본부는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CCTV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제공받고, 카드사로부터 교통카드·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수집을 통하여 이동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찾아내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방백신과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인 코로나19는 개인 위생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역 대응시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감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어 감염병 발생과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격리와 밀접 접촉자 동선 추적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에서 감염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격리에 중점을 둔 대응전략을 갖고, 확진자와 밀접히 접촉한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개인의 위치정보 추적, CCTV,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활용한다. 역학조사는 확진자와 직접적인 면담을 통하여 격리조치를 위한 필요한 기본 정보를 확보하지만, 역학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내지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접촉자의 진술에서 역학적으로 유의미한 근거를 찾아내고, 밀접 접촉한 모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연락하고 격리대상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확진자의 기억의 오류, 거짓 등과 같이 사실과 다른 동선을 진술한 경우에도 진술한 내용 이외의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동선 정보는 개인정보인 동시에 역학 조사를 위한 사회적 정보이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성격의 정보는 경우에 따라 접촉자는 물론이고 대중들에게까지 공개된다.¹⁸⁾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¹⁹⁾과 공개의

18) 박미정,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1)—Contact Tracer와 밀접 접촉 추적 앱—”, 『BRIC VIEW』, BRIC, 2020, 2면.

19) 감염의 또 다른 이름은 접촉이다. 코로나19는 특정 거리 내에서 이동하는 비말을 통해 감

정당성과는 별도로,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된다. 이하 아래에서는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예외 인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분쟁조정, 단체소송 등)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의 수집·동의와 관련하여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3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 배제 규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 할 수 있다.

나.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역학조사에 활용된 자료 수집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감염병 예방법이다. 자세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 제2항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염이 발생한다. 따라서 접촉은 물리적인 근접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거리적 분산이 감염병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감염자와 접촉된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 밀접 접촉자의 동선 추적을 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박미정, 앞의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1)—Contact Tracer와 밀접 접촉 추적 앱—’, 6면.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34조의2 제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74조에는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관계자의 비밀누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제76조의2 제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²⁰⁾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제1호),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제2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제3호),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교통카드 사용명세, 영상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20)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확진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진자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진다.

동조 제3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7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제1호),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제2호),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제3호)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 서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어디서, 언제 감염되었는지 추적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정보 공개의 범위는 감염병환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역학적 이유, 근거 법률,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하게 된다. 대중에게 공개하는 정보는 환자와 밀접 접촉이 존

재하거나 감염이 확산 될 수 있는 장소 등이다. 접촉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정보는 장소와 시간, 이동수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상점의 상호와 치료 받는 의료기관의 이름까지도 공개하기도 한다.²¹⁾ 이와 같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해당 확진자의 개인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공개²²⁾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무관한 감염병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과 보도 자료를 통해 불필요하고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면 사생활의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명예훼손과 모욕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어, 비난과 집단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²³⁾ 이는 지난 2018년 메르스 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공개하는 과정에서의 상황과도 유사하다고 한다.²⁴⁾ 아래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예외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은 정보의 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상당하다.²⁵⁾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공개가 이루어지

21) 박미정, 앞의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1)—Contact Tracer와 밀접 접촉 추적 앱—’, 8면.

22) 2020.4.15.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 영국과 독일 등이 공개하는 접촉자 정보를 비교하면서 이들 나라 중 한국 정부가 가장 많은 유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고 기사화했다. How Coronavirus Is Eroding Privacy, Wall Street Journal, 2020.4.15.; 박미정, 앞의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1)—Contact Tracer와 밀접 접촉 추적 앱—’, 7면.

23) 송가영,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10호), 경찰대학 범죄수사학연구원, 2020, 17면.

24) 이진규, “감염병예방법의 정보공개 규정 살펴보기—공공의 건강 및 안전,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균형”, 『KISA REPORT』 VOL.3., 2020, 11-13면.

25) 송가영, 앞의 논문, 23면.

는 경우에도 최소한 정보의 공개 전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확진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동선을 10분 내에 도출할 수 있는데, 현재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되고 있고,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고지하고 있다.²⁶⁾

또한 정부는 고위험시설을 지정하고 2020년 6월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 도입하였다. 이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경보 심각과 경계 단계에만 적용된다. 전자출입명부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분산 보관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 두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명부에 기록된 정보는 4주후 자동 파기된다.²⁷⁾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최대한으로 제거한 추적 시스템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및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된다. 가령 특정장소 방문자의 코로나19 검사 참여를 요청하기 위하여 인근 기지국의 접속자 정보를 활용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문제메세지가 발송되는데,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 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²⁸⁾ 그러나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26)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어도 28개국 이상이 스마트폰 앱의 GPS 또는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 데이터를 활용하여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거나 추적용 전자 밴드를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블루투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밀접 접촉자 추적 모니터링 앱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경로를 지나간 사람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이 앱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opt-in)해야 작동한다. 더욱이 이 앱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시스템 설계에 적용된다고 해도 보건당국의 신원 확인과 연락하는 절차 등을 통하여 익명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 박미정, 앞의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1)—Contact Tracer와 밀접 접촉 추적 앱—’, 8-10면, 표2 참조.

27)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것을 예상하여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의 휴대기기 위치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관찰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옵트아웃(opt-out) 할 수 있다. 역학 조사관점에서는 그 위치나 장소를 밝히고 싶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라면 밀접 접촉자의 수나 예상했던 추적 횟수 등에 오류가 생기거나 역학적 판단에 방해가 되는 데이터가 수집될 수도 있다. 박미정, 앞의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1)—Contact Tracer와 밀접 접촉 추적 앱—’, 10면.

28) 조성은,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 처리 이슈와 과제”, 「KISDI Premium Report」, 정보

경우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개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국민에게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 등의 또 다른 불안으로 남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역학조사를 통하여 밝혀내지 못한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를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초 수집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코로나19 대응 초기에 감염병환자의 공개된 정보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신원이 특정될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무관한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까지 불필요하게 노출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서²⁹⁾를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통신정책연구원, 2020, 19-21면.

29) 국가인권위원회 2020.3.9. 성명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확진환자가 낳자 및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경로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34조의2 제1항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변경하였다.

새로운 지침에 의하여 2020.3.14. 이후부터 직장명과 거주지 세부 주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이동 수단, 탑승 장소와 일시, 접촉한 시간대 등 공간적 정보와 시간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만약에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켰을 경우 직장명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동 경로의 공개 기간은 증상이 발현된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증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한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역학적 매개변수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³⁰⁾

이와 같이 감염병 대응에서 밀접 접촉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보관이나 공개 등을 통해 활용될 때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비식별화 조치,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요구되는 방지조치³¹⁾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³²⁾

IV. 결론

편리한 정보화시대의 편익을 이용함에는 개인정보 내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노출 등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근래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해당 감염병 확진자의 이동 동선의 상세한 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해당 개인의 프

30) 박미정, 앞의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1)—Contact Tracer와 밀접 접촉 추적 앱—’, 8면.

31)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중보건을 위해 공정하게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익명화 기술과 방법이 여러 측면에서 강구되고 있다. 데이터 수집의 최소화, 제한된 데이터 저장 기간,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존중, 데이터 처리 원칙 같은 법률적 근거의 보완 등이 중요하다. 박미정, 앞의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1)—Contact Tracer와 밀접 접촉 추적 앱—’, 12면.

32) 이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단순히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동의, 앱 소스 코드 공개, 암호화, 비식별화 조치, 데이터 최소화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에 국한되는 영향평가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영향평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한다. 박미정,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2)—Contact Tracer와 밀접 접촉 추적 앱—”, 『BRIC VIEW』, BRIC, 2020, 11면.

라이버시가 직접적으로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 코로나19 대응 초기에는 감염병 환자의 공개된 정보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신원이 특정될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무관한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까지 불필요하게 노출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그동안 방역당국에서는 여러 차례 감염병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하여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가 필요에 따라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누가 있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국민에게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 등의 또 다른 불안으로 남겨지기도 한다.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감염된 장소를 추적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역학조사를 통하여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를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초의 수집 목적 이외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서 밀접 접촉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보관이나 공개 등을 통해 활용될 때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비식별화 조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요구되는 방지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 2020.11.3. / 심사완료일 : 2020.12.14. / 게재확정일 : 2020.12.23.

[참고문헌]

-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 권영준,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적 이용의 위법성(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 235080 판결)”, 「민사판례연구 I」, 박영사, 2019.
- _____,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박미정,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1)—Contact Tracer와 밀접 접촉 추적 앱—”, 「BRIC VIEW」, BRIC, 2020.
- _____,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2)—Contact Tracer와 밀접 접촉 추적 앱—”, 「BRIC VIEW」, BRIC, 2020.
- 송가영,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10호), 경찰대학 범죄수사학연구원, 2020.
- 이소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사유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이진규, “감염병예방방법의 정보공개 규정 살펴보기—공공의 건강 및 안전,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균형”, 「KISA REPORT」 VOL.3., 2020.
- 전응준,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 고학수 편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박영사, 2016.
- 조성은,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 처리 이슈와 과제”, 「KISDI Premium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 How Coronavirus Is Eroding Privacy, Wall Street Journal, 2020.4.15.

[국문초록]

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배 성 호*

근래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확진자의 이동동선의 상세한 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직접적으로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

모든 개인정보가 똑같이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개인정보는 타인이 개인을 식별하도록 하는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공유재산적인 성격을 가지며, 공동체와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론 개인정보의 공동체 관련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축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경향성과 흐름을 파악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될 지표들이 추출될 수 있다면 사회적 효용이 높아진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감염된 장소를 추적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역학조사를 통하여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를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초의 수집 목적 이외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서 밀접 접촉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보관이나 공개 등을 통해 활용될 때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비식별화 조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요구되는 방지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프라이버시, 감염병, 이동경로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Abstract]

Public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Infectious Diseases

Bae, Sung-Ho*

In particular, in the recent Corona 19 anti-virus response process, the personal information is widely exposed due to the detailed disclosure of the movement of the virus confirmed person, and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is likely to be directly infringed.

Not all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equally strongly. Some personal information has a shared property nature because it can be a sign to identify individuals, and acts as a medium to connect communities and individuals. Of course, there may be limitations in the community relevanc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f the indexes to be used for the community can be extracted by grasping the tendency and flow of the social community through the accum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will be able to make a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social utility will increase. This is the basis for considering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gether, and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a kind of information.

The reason for disclo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i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nfirmed person by tracking the infected place. Therefore, even if it is necessary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to find contacts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th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stitutionally and clarify the procedures and methods so as not to be misused for other purposes and purposes other than the first collection purpose. Also, if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to find close contacts in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the risk of privacy infringement is not generated at the time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but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through storage

*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or disclosure, the risk increases. In order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s require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encryption and non-identification measures.

Key words :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ivacy, infectious disease, movement path